

신한카드 법인회원 약관 변경 관련 주요내용

2016. 4. 29
법인영업2팀

신한카드 법인회원 약관이 '16년 6월 1일자로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중요한 변경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변경 전후 약관 내용은 첨부와 같습니다.

제목	개선 사항	개정 해당 문구	비고
제 9조 연회비 및 수수료 등	카드사가 정한 합리적 기준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없어 카드사가 자의적으로 연회비 반환기준을 정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반환기준보다 불리하게 운용할 우려 가 있음.	④ 회원이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 카드사는 카드사가 정한 합리적인 반환기준에 따라 기 납부한 연회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여 드립니다. 다만, 회원이 바우처, 할인 등 부가서비스 이용 시 제휴업체에 지급한 비용은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정
제 15조 카드의 분실·도난 신고와 보상	해당 약관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완전 면책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실제 금융회사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고객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기게 될 우려 가 있음	③ 회원 및 카드사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정사용(분실, 도난 신고시점 이후 발생 분은 제외)에 따른 모든 책임을 회원이 부담 합니다.	시정
제 18조 변경사항 의 통지	카드사의 과실 없이 고객의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카드사의 의사표시가 도달 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을 마련해야 함.	② 제①항의 통지를 태만히 함으로써 카드사로부터의 통지 또는 송부서류 등이 연착하거나 도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회원이 부담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에 회원에게 도착한 것으로 하여 그 도착으로 인한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개선
제 20조 신용정보 제공/활용 및 통보	자체 점검 후 문구 변경	~ 회원 및 카드사용자가 제공·활용에 동의한 범위 내에서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제휴업체와 정보를 교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해지한 이후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자체 개선
제 28조 연대보증 계약의 해지	경미한 의무위반에 시정을 최고하는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종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인하여 법인회원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 가 있음	⑦ 회원이 본 조에 따른 통지, 담보제공 의무 등을 포함하여 본 약관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카드사는 사전 서면 통지로써 본 카드 거래약정을 종료 할 수 있습니다.	시정
제 31조 관할법원	약관에 의해서 재판관할을 본점 또는 영업소 소재지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경제적 약자인 고객에게 제소 및 응소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 가 있음.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카드사의 본점.다른 영업소로 그 채권 관리를 위임한 경우에는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소의 소재지 지방 법원을 관할 법원 으로 합니다.	시정

구 분	현 행	개 정
<p>제 9조 연회비 및 수수료 등 → [조항신설] 제9조의2 계약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p>	<p>④ 회원이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 카드사는 카드사가 정한 합리적인 반환기준에 따라 기 납부한 연회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여 드립니다. 다만, 회원이 바우처, 할인 등 부가서비스 이용 시 제휴업체에 지급한 비용은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p>	<p>① 회원이 유효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 반환금액은 회원이 카드사와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이 경우 회원이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반영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반환금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카드의 발행·배송 등 카드 발급(신규로 발급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소요된 비용 2. 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 <p>② 카드사는 회원이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제①항에 따라 산정된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가서비스 제공내역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할 수 있습니다.</p> <p>③ 카드사는 제②항에 따라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할 때에는 그 연회비 반환금액의 산정 방식을 함께 해당 카드사와의 계약을 해지한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p> <p>④ 카드사는 제②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10영업일이 지나기 전에 반환지연 사유 및 반환 예정일을 계약을 해지한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p>

구 분	현 행	개 정
<p>제 15조 카드의 분실·도난 신고와 보상</p>	<p>③ 회원 및 카드사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정사용(분실, 도난신고시점 이후 발생분은 제외)에 따른 모든 책임을 회원이 부담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의에 의한 부정사용의 경우 카드의 미서명, 관리소홀, 대여, 이용위임, 양도, 보관,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카드사용자의 가족, 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에 의한 부정사용 또는 이들에 의해 제2호와 같은 원인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불법 매출에 관련된 부정 사용의 경우 부정사용의 피해조사를 위하여 카드사가 정한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진술을 한 경우 카드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p>③ 회원은 제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의 부정사용(분실·도난 신고시점 이후 발생분은 제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거나 카드의 관리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회원이 카드의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부정사용 피해조사를 위한 카드사의 정당한 요구에 회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유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행한 경우
<p>제 18조 변경사항의 통지</p>	<p>② 제①항의 통지를 태만히 함으로써 카드사로부터의 통지 또는 송부서류 등이 연락하거나 도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회원이 부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에 회원에게 도착한 것으로 하여 그 도착으로 인한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p>	<p>② 카드사가 과실 없이 회원의 변경된 주소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원이 제①항의 통지를 태만히 함으로써 카드사로부터의 통지 또는 송부서류 등이 연락하거나 도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회원이 부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에 회원에게 도착한 것으로 하여 그 도착으로 인한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p>
<p>제 20조 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및 통보</p>	<p>① 카드사가 본 약관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 및 카드사용자의 개인신용정보는 관련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며, 회원 및 카드사용자가 제공·활용에 동의한 범위 내에서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제휴업체와 정보를 교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해지한 이후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하지 않습니다.</p>	<p>① 카드사는 본 약관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 및 카드사용자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련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회원 및 카드사용자가 제공·활용에 동의한 범위 내에서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제휴업체와 정보를 교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해지한 이후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 이외에는 이용하지 않습니다.</p>

구 분	현 행	개 정
제 28조 연대보증 계약의 해지	⑦ 회원이 본 조에 따른 통지, 담보제공 의무 등을 포함하여 본 약관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u>카드사는 사전 서면 통지</u> 로써 본 카드 거래 약정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⑦ 회원이 <u>연대보증인 교체, 연대보증약정 해지에 따른 담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카드사는 10영업일 전에 카드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10영업일이 경과할 경우 카드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u>
제 31조 관할 법원	①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카드사의 본점. 다른 영업소로 그 채권관리를 위임한 경우에는 <u>이 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소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u>	①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회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u>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소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u>